#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4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 김선교·김상훈·구자근

김성원 · 김예지 · 김상욱

이철규 • 윤상현 • 박준태

임종득 • 박수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교란·마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 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되고 있음.

이에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법률 제 호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영역"을 "영역 또는 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국민 또는 영역"을 "국민, 영역 또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9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u>영</u>	
<u>역</u> 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영역 또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
	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	10
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	
국 <u>국민 또는 영역</u> 에 위해	국민, 영역 또는 정보통
(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	<u>신기반시설</u>
를 말한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